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5가합5710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대영, 심정훈

피고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변론 종결2021. 5. 7.

판결 선고2021. 7. 23.

주 문

1. 가. G의 피고 E에 대한 2011. 8. 25.자 8,000만 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C은 6,000만 원, 피고 D은 2,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G의 피고 E에 대한 2011. 9. 15.자 1,000만 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G의 피고 B에 대한 2011. 9. 8.자 2,900만 원, 2011. 9. 27.자 1,300만 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G의 피고 C에 대한 2011. 9. 27.자 1,800만 원, 2012. 5. 25.자 3,000만 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4,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G의 피고 D에 대한 2011. 9. 26.자 1,000만 원, 2011. 9. 27.자 1,000만 원, 2011. 9. 27.자 1,500만 원, 2012. 3. 8.자 3,500만 원, 2012. 6. 29.자 600만 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7,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가. G의 피고 F에 대한 2011. 9. 6.자 1,000만 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 내지 5항, 제6의 가항과 같은 판결과 주위적으로 주문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제6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E는 8,000만 원(제1의

나.항), 1,000만 원(제2의 나.항), 피고 F은 1,000만 원(제6의 나.항)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1968. 6. 22. 설립되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2) G는 1998. 8. 27.부터 2007. 8. 29.까지 A의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였고, 2010. 9. 3.부터 2011. 9. 17.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다.
- 3) 피고 B는 G의 누나, 피고 C은 G의 아들, D은 G의 부인, 피고 F은 G의 딸, 피고 E는 피고 F의 배우자이자, G의 사위이다.

나. H 주식회사 관련 대출

- 1) A은 2006. 1. 10.부터 2011. 6. 29.까지 31회에 걸쳐 실질적으로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대출을 하면서 ① I 주식회사, ② J 주식회사, ③ 주식회사 K, ④ L 주식회사, ⑤ 주식회사 M, ⑥ 주식회사 N, ⑦ 주식회사 O, ⑧ 주식회사 P, ⑨ 주식회사 Q, ⑩ 주식회사 R, ⑪ 주식회사 S, ⑫ 주식회사 T에 대출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H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합계 775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 2) A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2002. 4. 29.부터 2011. 6. 29.까지 80억 원 내지 547억 2,600만 원의 사이에서 변동되었다.
- 3) A의 대표이사 U, 여신담당 전무이사 V은 위 사실 중 2005. 10. 17.부터 2011. 3. 30.까지 H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2. 10. 12.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312 등, 서울고등법원 2012노3666, 대법원

2013도6826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4) A은 H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760억 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중 G가 감사위원으로서 대출을 승인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75억 원으로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6. 3. 23.	I	20억 원	20억 원
2	2006. 6. 29.	20억 원	20억 원	
3	2006. 11. 29.	J	50억 원	35억 원

다. W 대출 관련

1) U, X, V, U, Y는 2004. 10. 15.부터 2011. 7. 5.까지 W에 대하여 주식회사 Z 등 14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28건, 합계 1,777억 4,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2) A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2004. 9. 22.부터 2011. 6. 28.까지 171억 7,900만 원 내지 684억 700만 원의 사이에서 변동되었다.

3) U, X, V은 제대로 된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W에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2. 10. 12.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관련 형사판결).

4) A은 W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1,728억 3,500만 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중 G가 감사위원으로서 대출을 승인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5억 2,000만 원으로,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4. 10. 15.	W	45억 원	15억 2,000만 원
---	---------------	---	-------	--------------

라. G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경과

1) 원고는 G 등을 상대로 G가 대출심사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대출승인서에 결재하여 'H 관련 대출', 'W 관련 대출'에서 개별차주,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5104호로 손해 일부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결과 2015. 7. 16. G에 대하여 5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G는 위 소송결과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123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7. 1. G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G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위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43399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0. 5. 28. 위 항소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865)은 대출로 인한 A의 손해 중 G의 책임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의 범위를 10%로 제한하여 9억 2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3억 5,2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G는 위 환송 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0다272776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환송 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G의 금원지급행위

G는 2011. 8. 25.부터 2012. 6. 29.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12회에 걸쳐 가족들인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아래와 같은 지급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1	2011. 8. 25.	80,000,000원	피고 E
2	2011. 9. 15.	10,000,000원	피고 E
3	2011. 9. 8.	29,000,000원	피고 B
4	2011. 9. 27.	13,000,000원	피고 B
5	2011. 9. 27.	18,000,000원	피고 C
6	2012. 5. 25.	30,000,000원	피고 C
7	2011. 9. 26.	10,000,000원	피고 D
8	2011. 9. 27.	10,000,000원	피고 D
9	2011. 9. 27.	15,000,000원	피고 D
10	2012. 3. 8.	35,269,139원	피고 D
11	2012. 6. 29.	6,274,250원	피고 D
12	2011. 9. 6.	10,796,420원	피고 F
합계	267,339,809원		

바. 피고 E, F의 금원지급행위(피고 C, D의 전득행위)

1) 피고 E의 금원지급행위 가) 피고 E는 2011. 8. 25. G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 C, D에게 지급하였다.

1	2015. 1. 9.	6,000만 원	피고 C
2	2011. 10. 4.	2,000만 원	피고 D

나) 피고 E는 2011. 9. 15. G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1	2013. 11. 4.	1,000만 원	피고 D
---	--------------	----------	------

2) 피고 F의 금원지급행위 피고 F은 2011. 9. 6. G로부터 지급받은 10,796,420원 중 1,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1	2012. 3. 7.	1,000만 원	피고 D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8 내지 19, 21, 22, 24 내지 29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G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수익자 내지 전득자는 지급받은 돈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A의 H에 대한 미회수 대출금액 75억 원과 W에 대한 미회수 대출금액 15억 2,000만 원에 대하여 G의 손해배상책임을 10% 상당인 9억 200만 원으로 인정하는 환송 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G에 대하여 9억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25.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 G의 원고에 대한 예금보험금채권 70,385,132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015. 11. 25.을 기준으로 70,385,132원만큼 감소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상계에 불구하고 원고의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합계액 267,339,809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피고들은, 피고 D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감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 D의 공탁으로 인하여 원고의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G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전인 2011. 8.경 G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예금	159,033,587원 ¹⁾ 을 제3호증의 2011년 예금합계액
2	경기 가평군 AA 토지	205,000,000원 ²⁾ G는 2012. 7.경 위 토지를 20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이를 2011년 8.경 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한다.
3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에 사용된 금원	267,339,809원
합계	631,373,396원	

G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원고에 대하여 9억 200만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G의 채무초과상태는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9억 200만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가족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G는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하여 채권자로서는 그것이 증여인지 다른 원인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원지급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감소를 가져왔다는 점만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더 나아가 그 처분의 법률적 평가가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는 없다. 오히려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다투어야 한다).

2) 또한 위와 같이 G에게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 내지 전득자들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G가 2011. 8. 5. 피고 E에게 지급한 8,000만 원 G가 2011. 8. 25. 피고 E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E는 2011. 10. 4. 피고 D에게 2,000만 원, 2015. 1. 9.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가) 금원지급행위의 성격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 E, C, D의 주장

피고 E가 2006년경 호주로 이주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던 집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피고 D에게 맡겨 두었는데, 피고 D이 위 돈을 AB, AC, AD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 E가 2011년경 자녀의 유학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여 위 돈의 반환을 구하자 G가 그 중 8,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가 피고 D에게 보관하였던 금원 중 8,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G가 2011. 8. 5. 피고 E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이를 전득한 피고 D, C의 악의도 추정된다.

- ① 피고 E는 2008. 11. 22. 이미 2년을 거주한 임차인과 임대차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2009. 11. 3.경으로 정하였는바, 피고 E가 임차인으로부터 최초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시점은 2006. 11.경으로 보인다. 그런데, G가 AC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시점은 2006. 10.경이고, 피고 D이 AD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시점은 2012. 3. 26.이다.
- ②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가 2억 원을 피고 D에게 송금하였다거나 맡겨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 E가 2억 원의 돈을 피고 D에게 맡겨두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③ 피고 E는 G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1. 10. 4. 피고 D에게 2,000만 원, 2015. 1. 9.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 E가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필요하여 위 2억 원의 반환을 구하자 G가 2억 원 중 일부를 돌려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 C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F과 동업으로 평택시 AE에 위치한 주택 3세대를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F이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피고 C이 혼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E가 2015. 1. 9.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 F을 대신하여 동업자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 F은 2015. 6. 8. 피고 E에게 6,18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였다.

(2) 판단

을 제7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의 사행행위에 관하여 피고 C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피고 C이 피고 F과 동업하여 주택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② 피고 C이 피고 F과 함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F이 6,00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한다면 피고 C이 그로 인한 임대수익을 피고 F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피고 C이 임대 목적으로 매수한 주택의 분양대금은 주택 1세대당 8,100만 원, 3세대 합계 2억 4,300만 원인데, 피고 F이 그 중 6,000만 원을 부담하고도 피고 C이 주택 3세대 소유권 전부를 취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④ 피고 F이 2015. 6. 8. 피고 E에게 6,18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F이 약 5개월 동안 6,000만 원을 피고 E로부터 빌린다는 것이나 피고 F이 이를 변제할 때에 1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은 피고 F과 피고 E가 부부관계인 것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2) G가 2011. 9. 15. 피고 E에게 지급한 1,000만 원 G가 2011. 9. 15. 피고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E가 2013. 11. 4. 피고 D에게 위 1,000만 원3) 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 E, D은 G의 위 금원지급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 E가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이나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E,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G가 2011. 9. 15. 피고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위 1,000만 원을 전득한 피고 D은 G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악의라고 추정된다.

3) G가 2011. 9. 8. 피고 B에게 지급한 2,900만 원 G가 2011. 9. 8. 피고 B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A에서 근무하는 G의 예금유치 실적 달성을 위해 맡겨 둔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가 A에 근무한 G의 실적을 위하여 맡겨 둔 돈이라면, G가 아닌 피고 B 명의로 저축을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 B가 G에게 돈을 맡겼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G가 2011. 9. 8. 피고 B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한 것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G가 2011. 9. 27. 피고 B에게 지급한 1,300만 원과 피고 D에게 지급한 1,000만 원 G가 2011. 9. 27. 피고 B에게 1,300만 원,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것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D은, G가 가족들을 대신하여 자금을 관리하여 왔고, 가족들이 요구할 경우 해당 돈으로 가입한 적금을 해지하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만기가 도래한 다른 적금을 인출하여

관리하던 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D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G가 2011. 9. 27. 피고 B에게 1,300만 원,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B, D이 G에게 자금을 맡겼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없다. 피고 B, D이 G에게 돈을 맡긴 금융거래내역은 없고, 위 피고들이 G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금융거래내역만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G는 만기가 도래한 피고 F 명의의 정기적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는데, 위 정기적금의 만기가 도래한 때는 2011. 6. 20.인데 반하여 G가 피고 B, D에게 돈을 지급한 때는 2011. 9. 27.으로 상당한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③ 피고 D은 G의 배우자인바, 피고 D이 G에게 자금을 맡긴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5) G가 2011. 9. 27. 피고 C에게 지급한 1,800만 원 G가 2011. 9. 27. 피고 C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1. 8. 26. G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중 1,8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1, 9,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을 제10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 C이 2011. 8. 26.

G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금원의 지급행위만으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G는 스스로 작성한 요약진술서(을 제8호증의 1)에서 '2,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그 중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G가 해약하였다는 위

정기예금은 2011. 9. 8. 신규로 가입한 정기예금인바, G가 아들인 피고 C에게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0만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가 19일 만에 해약하고 그 중 1,800만

원을 변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세금을 제외하면 4,415원에

불과하다)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2011. 8. 26. G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거나, G가 2011. 9. 27. 피고 C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변제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G가 2011. 9. 27. 피고 C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G가 2012. 5. 25. 피고 C에게 지급한 3,000만 원 G가 2012. 5. 25.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금이 필요하여 G에게 요구하였고, G는 가장으로서 가족구성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상부상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G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것으로 보인다(2021. 3. 29.자 준비서면 6면 참조). 따라서 G가 2012. 5. 25.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7) G가 2011. 9. 26. 피고 D에게 지급한 1,000만 원 G가 2011. 9. 26.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⁴⁾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 D은 이에 대하여 2012. 6. 29. G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할 뿐 달리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을 제9호증의 1, 2021. 3. 29.자 준비서면 6면, 2021. 5. 20.자 준비서면⁵⁾ 2면). 따라서 G가 2011. 9. 26.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8) 2011. 9. 27. 피고 D에게 지급한 1,500만 원 G가 2011. 9. 27. 피고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가족간의 여행경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각 세대별로 분담하여 G에게 지급하고, G가 해당 자금을 관리하다가, G가 3형제에게 이를 배분하기 위하여 피고 D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의 형제들이 여행경비를 분담하여 G에게 관리를 맡겼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② 을 제11호증의 3, 11의 각 거래내역은 하나의 필기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작성방법 및 보관상태에 비추어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G가 형제들을 위하여 여행경비 등을 관리하였다면, G가 이를 직접 돌려주는 것도 가능한데, 피고 D에게 지급하여 분배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가 여행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한 돈을 반환하기 위하여 피고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G가 2011. 9. 27. 피고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9) 기타 자금 지급에 관한 주장 G가 피고 D에게 2012. 3. 8. 35,269,139원(원고는 그 중 3,500만 원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을, 2012. 6. 29. 6,274,250원(원고는 그 중 600만 원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을 각 지급하고, 2011. 9. 6. 피고 F에게 10,796,420원(원고는 그 중 1,000만 원에 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을 지급한 사실, 피고 F은 2012. 3. 7. 위 돈 중 1,00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A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G에게 돈을 맡겼고, 이를 반환받은 것이거나 G가 가장으로서 번 돈을 배우자이자 전업주부인 피고 D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F, D이 G에게 자금의 관리를 맡겼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② G가 가족들을 위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다면, 가족들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음에도 G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G가 피고 D에게 2012. 3. 8. 35,269,139원을, 2012. 6. 29. 6,274,250원을 각 지급하고, 2011. 9. 6. 피고 F에게 10,796,420원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D이 2012. 3. 7. 피고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득한 것과 관련하여 G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악의라고 추정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G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① G의 피고 E에 대한 2011. 8. 25.자 8,000만 원 금원지급과 관련하여, 전득자들인 피고 C은 6,000만 원, 피고 D은 2,000만 원, ② G의 피고 E에 대한 2011. 9. 15.자 1,000만 원 금원지급과 관련하여, 전득자인 피고 D은 1,000만 원, ③ G의 피고 B에 대한 2011. 9. 8.자 2,900만 원, 2011. 9. 27. 1,300만 원의 각 금원지급과 관련하여 수익자인 피고 B는 4,200만 원(= 2,900만 원 + 1,300만 원), ④ G의 피고 C에 대한 2011. 9. 27.자 1,800만 원, 2012. 5. 25.자 3,000만 원의 각 금원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C은 수익자로서 4,800만 원, ⑤ G의 피고 D에 대한 2011. 9. 26.자 1,000만 원, 2011. 9. 27.자

1,000만 원, 2011. 9. 27.자 1,500만 원, 2012. 3. 8.자 35,269,139원(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금액은 3,500만 원), 2012. 6. 29.자 6,274,250원(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금액은 600만 원)의 각 금원지급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D은 수익자로서 합계 7,600만 원(=1,0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3,500만 원 + 600만 원) ⑥ G의 피고 F에 대한 2011. 9. 16.자 10,796,420원(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금액은 1,000만 원)의 금원지급과 관련하여, 전득자인 피고 D은 1,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전득자가 있는 사해행위에 관하여,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므로, 전득자가 아닌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형석

판사박상인

판사김태진

- 1) 을 제3호증의 2011년 예금합계액
- 2) G는 2012. 7.경 위 토지를 20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이를 2011년 8.경 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한다.
- 3) 갑 제24호증에 의하면, 피고 E가 2013. 11. 4. 피고 D에게 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4) 원고는 이 금원지급에 관하여 소장에서는 지급일자를 '2012. 6. 29.'로 기재하였다가 오기라는 이유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11. 9. 26.'로 수정하였다.
- 5)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으로 참고서면으로 참조한다.